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5. 21 선고 2023가단30631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2.

판 결 선 고 2024. 5. 21.

주 문

-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0. 8. 4.자 합의해제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소외 주식회사 D(이하 'D')는 2016. 7. 6. 소외 C에게 300만 원을, 변제기 2021. 7. 6., 이자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.9%로 하여 대여하여 주었다. D는 2019. 5. 29.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(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392306) 2023. 7. 5. 원고 승소의 판결(5,591,854원 및 그 중 2,993,127원에 대하여 2023. 4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)이 선고되어 같은 달 7. 28.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(이하 '이 사건 채권').

나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등

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, 2020. 6. 5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9. E, C 각 1/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(이하 C에 대한 등기를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.

그런데 피고와 C은 2020. 8. 4. 이 사건 부동산 1/2 지분에 관한 위 증여를 합의해제하였고(이하 '이 사건 합의해제'라 한다),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.

다.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C의 무자력

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1/2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, F에 4,108,000원, 서민금융진흥원에 9,625,000원 및 이 사건 채권 원금 2,993,127원의 채무 등이 있어 무자력이었다.

[인정 증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, 변론 전

체의 취지

2. 채권자취소권 성립 여부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합의해제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1) 이 사건 합의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

피고는,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애초부터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는 행위 내지 부동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합의해제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부동산 1/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, 피고가 C의 위 증여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따라서 C이 피고로부터 증여받아 자신의 책임재산에 속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 1/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다면, 이 사건 합의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.

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) 이 사건 합의해제 : 사해행위

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이 사건 부동산 1/2 지분이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바,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1/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/2 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, 이 사건 합의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 중 1인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,

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, 이 사건 합의해제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홍준

별지